

[사 건 명] 행심 2018 - 7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1. 청구인과 □□□은 ○○학교 5학년 진학시 같은 반에 편성이 되어 5학년 1학기 때에는 친하게 지냈으나, 2학기 때부터는 이들의 교우관계가 나빠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다른 친구들에게 □□□에 대해 욕을 하고, □□□에게 □□□의 말투와 행동 등을 고치지 않으면 절교하겠다고 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다른 친구들에게 □□□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였고, 그 정보에 대해 □□□이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붙이기도 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의 휴대전화상의 카카오톡을 통해 □□□에 대해 욕하는 것을 작성한 후, 그 화면을 캡처하여 다른 친구들이 □□□을 협박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3. 그리고 □□□ 학생이 집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청구인은 전화로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심지어 집안을 영상으로 보여 달라고 하였으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고 카카오톡에서 □□□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청구인의 생각과 뜻대로 하기를 □□□에게 강요하였으며, 이러한 일을 겪은 □□□은 2018. 11. 12.경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4. 2018. 12.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 회의를 개최하였고, □□□ 및 □□□의 모친, 청구인의 모친이 위 학폭위 회의에 각 참석하여 관련 진술을 한 후 학폭위 위원들의 논의 및 심의 결과가 이 사건 청구인이 □□□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하여 위 청구인을 가해학생, 위 □□□을 피해학생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는 출석정지 3일,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특별교육이수 9시간 등의 처분(이하 ‘출석정지 3일 등 처분’ 이라고 함) 결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청구인은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해 위 학폭위의 출석정지 3일 등 처분 결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을 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청구인은 2018. 12. 13.경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1. 청구인측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접수 사안에 대해 전달 받고, 청구인이 □□□ 학생에게 사과를 하여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학폭위의 참석 통지서를 받았으며 담임교사에게 물어보니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고 청구인의 모친만 참석을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으며,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2. 핸드폰 카톡 상태메세지, □□□ 학생과 청구인의 틱톡 화면 및 동영상, 에버랜드 소풍 사진 등을 보면 □□□이 청구인에게 오랜 시간 동안 협박,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 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시도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할 수 없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 학생에게 오랜 시간 괴롭힘과 강요,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4점, 반성정도 3점, 화해정도 2점 총 16점을 부과하였으며, 그 결과 제8호 전학조치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학폭 사안이 처음이라는 점,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여 6호 출석정지 조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학폭위 회의 개최 통지서가 배부된 후에 청구인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왜 열리는지 질문하여,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서 접수된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미 사안에 대해 담임교사가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 측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미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2018. 12. 5. 12시 경, 청구인의 부모에게 문자로 학폭위 회의에 청구인 학생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알렸으며, 청구인에게도 수업 후에 참석해야 할 것을 말했으나, 당시 청구인은 ‘엄마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으므로 청구인과 함께 참석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청구인이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아서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진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없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제17조에 의거하여 결정한 적법·타당한 조치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서상의 조치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주장하는 절차적인 하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측에 학폭위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서면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학폭위 회의 개최 당일인 2018. 12. 5. 오후 12:53 ~ 12:58경 청구인의 부모와 담임선생님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청구인 부모뿐만 아니라 청구인 학생에 대해 학폭위 회의에 참석을 바란다는 학폭위 담당교사의 말을 전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은 참석을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폭위 회의에 청구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지 않은 행동도 조치원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주장 및 제출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조치원인 사실, 즉 청구인이 □□□에게 행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학폭위 신고 전에 청구인과 틱톡영상을 만들고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가서 사진도 함께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의 진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 당한 피해사실이 그러한 사실들로 상쇄된다거나 희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이미 □□□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장이 피해학생에 대한 화해 시도가 없었다고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화해가 없었다고 언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논의 결과 ‘보통’으로 판단을 하였는지 화해가 없었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청구인에 대해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학폭위에서 회의한 결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3점, 학교 폭력의 고의성 4점,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3점, 화해 정도 2점 등 합계 16점이 산정되었고,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르면 제8호에 해당하는 전학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전에 학교폭력의 처분을 받은 바 없었던 점, 청구인도 당시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적인 목적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전학조치 처분을 감경하여 6호 처분인 출석정지 3일의 처분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학폭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